

교섭요구 사실의 공고

전국대학노동조합 경북대지부로부터의 ‘2024년도 단체교섭 요구’ 사실을 관련 법령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등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경북대학교 생활관과 교섭하고자 하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(교섭요구기한)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2024. 4월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 개요

노동조합 명칭	대표자(지부장)	교섭요구일자
전국대학노동조합 경북대학교지부	위원장 백선기 (지부장 박영란)	2024. 4. 2.

○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: 2024. 4. 9.(화)까지

○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

※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

-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
-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

2024. 4. 2.

경북대학교 생활관장

